

자.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대상 확대(영 제110조)

(1) 국제입찰뿐만 아니라 일정부분의 국내입찰까지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의 취소·시정을 구하는 이의신청 및 재심에 의한 분쟁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내입찰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 70억원·전문공사 7억원 이상의 공사 및 다른 법령에 의한 6억원 이상의 공사를 분쟁조정 심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2)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조정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소송 등으로 인한 시공중단 및 지연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저작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5년12월30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문화관광부
장 관

정 등 채

●대통령령 제19240호

저작권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저작권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저작권법시행령”을 “저작권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각각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한국마사회법”을 “「한국마사회법」”으로, “경륜·경정법”을 “「경륜·경정법」”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5호중 “항공법”을 “「항공법」”으로, “해운법”을 “「해운법」”으로 하며, 동조제6호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동조제7호중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에서 하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
-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하는 발행일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

시설

나.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미술관

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마.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원

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관

사. 「여성발전기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여성관련 시설

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

련관

자.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중 시·군·구

민회관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 신문 및 정보통신망에”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또는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심의 조정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중 “30일”을 “15일”로 한다.

제16조중 “저작권등록신청서·출판권등록신청서·저작인접권등록신청

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신청서”를 “등록신청서”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이나 팩시밀리에 의한 방법(이하 “우편등의 방법”이라 한다)으로”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우편등의 방법으로”로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2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서면으로”를 “우편등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2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를 각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우편등의 방법으로”로 하고, 동조제3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2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서면으로 권리주장자에게”를 “권리주장자에게 우편등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28조의6중 “수령인의 성명등 및 연락처를 표시하여야 한다.”를 “수령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명 및 소속부서명

2. 직접 통화가 가능한 전화번호 및 팩시밀리번호

3.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조직) ①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연구실 및 사업본부를 둔다.

②사무국·연구실 및 사업본부에는 사무국장·연구실장 및 본부장을 각각 두고,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연구실장·본부장 및 직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사무국·연구실 및 사업본부의 조직·정원·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중 “저작권법”을 각각 “「저작권법」”으로 하고, 제3조제1호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하며, 제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특수교육진흥법”을 “「특수교육진흥법」”으로 하며, 제4조의2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13조제5항중 “민법”을 “「민법」”으로, “공탁법”을 “「공탁법」”으로 하며, 제22조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신청내용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저작권법시행령 개정이유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무료상영을 제한하는 범위가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영상물 제작자의 권익이 훼손됨에 따라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무료상영 범위를 축소하고, 저작재산권자를 확인할 수 없는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승인 절차를 완화함으로써 해당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저작재산권 등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대하여는 저작권 침해 소명자료의 제출 의무를 삭제함으로써 온라인에서 일시에 대량으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무료공연범위 축소(영 제2조제8호 및

제9호 신설).

- (1)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무료상영을 제한하는 범위가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영상제작자의 권익이 훼손되고 있음.
- (2) 찻집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에서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무료 상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등에서 발행된 지 6월 이내의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무료 상영을 금지하도록 함.
- (3)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무분별한 무료상영이 억제됨으로써 영화의 극장 상영 활성화 및 비디오 대여점의 활성화 등으로 영상제작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승인 절차 완화(영 제6조제2호 및 영 제8조제1항 단서).

- (1)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승인절차로서 저작재산권자의 확인방법이 일간신문의 공고로 한정되어 있고, 승인신청 내용에 대한 관보공고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어서 승인신청자가 과도한 비용과 시간을 들이도록 하고 있음.
- (2)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승인신

청시 저작재산권자를 확인하기 위한 공고를 일간신문 또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정보통신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하도록 하고, 승인신청 내용에 대한 관보공고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함.

- (3)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승인 절차를 완화함으로써 저작재산권자를 확인할 수 없는 저작물의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저작권 침해 소명자료 제출 의무 삭제(현행 제28조의2제1항제3호 삭제)

- (1) 저작재산권자 등으로부터 저작재산권 등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저작권 침해의 대응시 저작물이 신탁관리대상임을 입증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에서 일시에 대량의 불법 복제물이 유통되는 경우 그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
-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의 중지를 요구하는 경우 종전에는 복제 중지 등을 요청하는 저작물이 신탁관리대상임을 입증하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저작권 침해 소명자료의 제출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온라인에서 일시에 대량의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대응하여 불법복제물의 유통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5년12월30일

국무총리 **이해찬**

국무위원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대통령령 제19241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법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지원센터를 통하여 신청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청내용 중에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법제13조의2제5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장설립등의 신청서 또는 변경신청서 사본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0일(관계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 회신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기간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동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제1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또는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것부터 적용한다.